

제27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
도시·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
【2021. 3. 4.(목) 10:00】

서울특별시 강서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도시·교통위원회

서울특별시 강서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2021년 3월 4일
전문위원 배 금 택

1. 회부경위

- 가. 의안번호: 2021 - 13
- 나. 발 의 자: 최동철 의원 외 9명
- 다. 발의일자: 2021년 2월 17일
- 라. 회부일자: 2021년 2월 25일

2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시책 마련을 통해 구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삶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(안 제1조)
- 나. 조례에서 사용되는 보행권, 보행환경, 보행약자, 보도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(안 제2조)
- 다. 기본책무와 구민의 권리와 협력사항을 규정함(안 제3조, 제4조)
- 라. 보행환경 개선사업의 방향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5조)
- 마. 쾌적한 보행공간 확대를 위한 기준을 규정함(안 제6조)
- 바.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)
- 사. 시행규칙의 근거를 규정함(안 제8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」 제3조, 제4조
- 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협조부서: 교통행정과
- 라. 입법예고(2021. 2.19. ~ 2.24.) 결과: 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가. 제정취지

- 본 조례안은 「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」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을 근거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함

나. 주요 제정내용

○ 목적(안 제1조)

- 국민의 보행권 확보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의 조성 목적으로 규정함

○ 용어의 정의(안 제2조)

- 보행권¹⁾ · 보행환경²⁾ · 보행약자³⁾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 함

1) 보행권 : 「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라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 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

2) 보행환경 : 「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·생태적·역사적·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

3) 보행약자 :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, 고령자, 임산부,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,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

○ 기본책무(안 제3조)

- 구청장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함

○ 구민의 권리와 협력사항(안 제4조)

- 구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, 보행권 관련 정책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한 알권리를 규정하였으며,
- 특히, 보행공간 확보 및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과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적극 참여 및 협력하고 보행 중 주의의무를 다하라는 구민의 협력사항을 규정함
- 구민의 협력사항은 법률의 위임없이 주민의 협력의무 규정 형식을 취하고 있어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(조례) 단서 조항⁴⁾에 관해 해석의 여지가 있겠으나,
- 해당 조항이 의무규정의 형식을 취하더라도 조례를 위반할 경우 불이익을 주는 규정이 없으므로 단순히 선언적 의미의 규정으로 판단됨

○ 보행환경 개선 및 보행공간 확대 (안 제5조, 제6조, 제7조)

- 구청장은 보행환경개선사업 추진, 쾌적한 보행공간 확대,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열거하여 규정함

4)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(조례):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다. 종합의견

- 본 조례안은 차량 중심의 교통체계에서 벗어나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고, 보행약자와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음
- 이를 통해 체계적으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, 보행관련 시설물을 관리 및 유지하여 보행약자와 주민들이 편안히 걸을 수 있는 보행권을 확보함으로써 보행환경 개선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,
- 보행편의 개선 사업을 통한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업추진 상에 여러 부서가 연관되어 있는 만큼 부서간 적극적인 협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

□ 보행안전 및 편익증진에 관한 법률

제3조(보행권의 보장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의 안전 보장, 질서 유지 및 복리 증진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진흥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장애, 성별, 나이, 종교,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·지역적 사정 등에 따라 보행과 관련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
③ 보행권을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.

1. 시설물의 설치, 차량의 소통 등 보행여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제도 및 사업 등으로 인하여 보행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과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해당 제도 및 사업 등에 따른 편익보다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하여야 한다.
2.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의 폭,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량 등이 유사한 지역 간에는 보행여건의 격차가 심각하게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3. 보행정책의 수립·추진은 보행자의 안전과 목표지점에서의 접근의 편리성과 함께 삶의 공간으로서의 쾌적성 및 미관성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.
4. 보행권 증진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간에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이 체계적·합리적으로 조성·정비·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④ 안전한 보행환경이 적절히 조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행자에게 불리하게 책임을 부과하거나 법률을 적용·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자길을 통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, 임산부, 어린이, 장애를 입은 사람 등 스스로의 힘으로는 보행이 불편한 사람이 차별 없이 보행자길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